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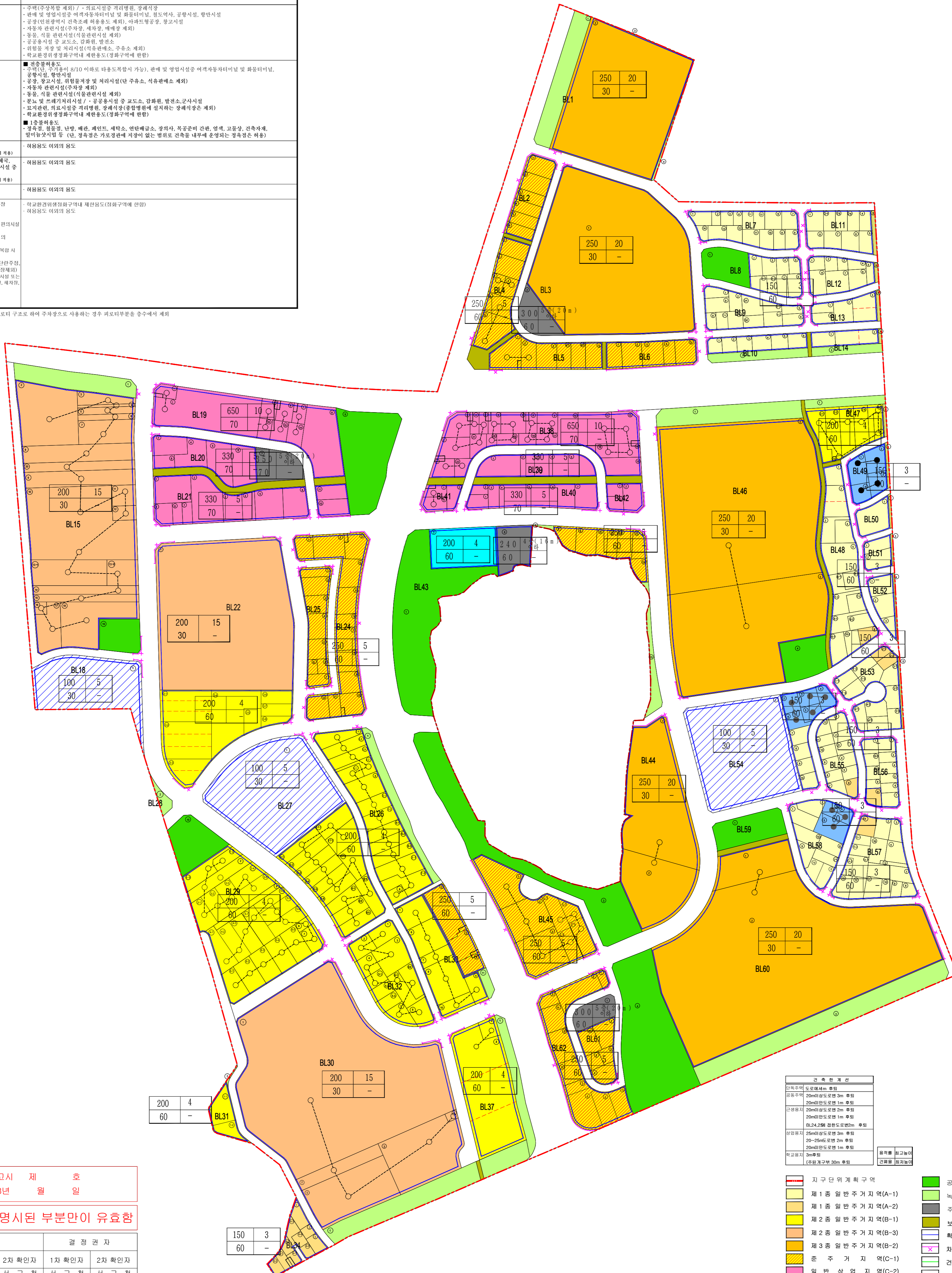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부분 -

변경



구분	해설	설명
A-1	단독주택	·해설용도 이외의 용도
A-2	1층 근린생활시설	·해설용도 이외의 용도
B-1	다세대, 연립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건설촉진법 적용) B-37은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건설촉진법 적용)	·해설용도 이외의 용도
B-2	·APT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법 적용)	·해설용도 이외의 용도
B-3	·APT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법 적용)	·해설용도 이외의 용도
C-1	·복합용도 이외의 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적용)	·주거(주택건설 제외) / - 의료시설중 의료병원, 장례식장 ·판매 및 영업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공공(인용광업외 건축용도 제외), 아파트형공장, 학교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정비장 제외) ·공공, 시설 관련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제외) ·공공시설중 도로, 교차로, 교차로, 교차로, 교차로, 교차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석유화학, 주유소 제외) ·의료관련시설중 의료기관(정신과 제외) ·의료관련시설중 의료기관(정신과 제외)
C-2	·복합용도 이외의 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적용)	·복합용도 ·주거(단, 주거용이 8/10 이하로 적용가능), 판매 및 영업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공공, 학교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석유화학소 제외)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공공, 시설 관련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제외) ·문화 및 스포츠 관련시설 / - 공공용시설중 교도소, 관공서, 박물관, 도서관, 문화회관, 체육관, 공연장, 전시관, 회의실, 회의실중 의료병원, 장례식장(중합방형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 ·의료관련시설중 의료기관(정신과 제외) ·의료관련시설중 의료기관(정신과 제외)
D-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적용)	·해설용도 이외의 용도
D-2	·1층 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 공중소, 우체국, 보건소 등 공공이 요하는 시설 및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적용)	·해설용도 이외의 용도
D-3	·중교시설중 중교시설	·해설용도 이외의 용도
D-4	·주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주택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법) ·지역상업시설중 동사무소, 공중소, 우체국, 보건소 등 공공이 요하는 시설 및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적용)	·아파트형주택지구내 제한용도(정확구역에 관한) ·해설용도 이외의 용도

\*) A-1, A-2, B-1용도의 경우 1층 부분을 제외된 구역으로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페넬트부분을 중수에서 제외



건축물 제한	
단독주택	도면상 30m 이하
공동주택	20m 이하도면상 3m 이하
다세대주택	20m 이하도면상 1m 이하
연립주택	20m 이하도면상 1m 이하
다세대주택	20m 이하도면상 1m 이하
연립주택	20m 이하도면상 1m 이하
다세대주택	20m 이하도면상 1m 이하
연립주택	20m 이하도면상 1m 이하
다세대주택	20m 이하도면상 1m 이하
연립주택	20m 이하도면상 1m 이하
다세대주택	20m 이하도면상 1m 이하
연립주택	20m 이하도면상 1m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A-1)		공
	제2종 일반주거지역(B-1)		녹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B-2)		주거차경계(E-1)
	준주거지역(C-1)		보통지건용도로
	일반상업지역(C-2)		희지경계선
	공공의용시설(D-2)		차량출입불허구간
	중교시설(D-3)		건축제한계선
			대지분할가능선
			공공주택(권정)
			공공주택(지정)
			주차장(권정)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 호  
서 기 2018년 월 일

본 도면은 변경으로 명시된 부분만이 유효함

구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건축사사무소 한울	서구청 도시개발과	서구청 도시개발과	서구청 도시개발과
직위	—	지역개발담당한담	—	지역개발담당한담
직명	건축사	지방시설 주사보	지방시설 주사보	지방시설 주사보
성명	박대용	김진만	황재현	김진만
확인인				

S = 1 : 3,000

